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지원 확대 및 빈 점포의 활용 지원
강화 등〉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75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지원 확대 및 빈 점포의 활용 지원 강화 등	2
※ 참고자료	
1.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8.
3. 회부연월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세대협업·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지원 확대 및 빈 점포의 활용 지원 강화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신 설>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신 설>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 ⑦ (생 략)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 ----- ----- -----. 1. -----임대료·관리비·공과금-----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청년상인의 공동 마케팅·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2의3. (현행과 같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3. (현행과 같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청년상인과 고령상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업 및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세대 통합형 점포 운영 장소</u>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온라인 판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기반 점포 운영 장소</u>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지역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제품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u>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항에 ①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②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공과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청년상인의 공동 마케팅·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신설).

그리고 비영리법인 등이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도에 ‘세대 통합형 점포 운영 장소’, ‘디지털 기반 점포 운영 장소’ 및 ‘지역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제품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7호 신설).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¹⁾을 지정할 수 있고(제13조제1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3조제3항 각호).

또한, 현행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청년상인²⁾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에 따른 임대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6조제1항 각호),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등이 고객안내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제17조제1항 각호).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전통시장 관련 실태조사³⁾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전체 전통시장(1,403개) 중 7.6%(106개)만 ‘전용 홈페이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쇼핑몰’과 ‘모바일 앱’을 보유한 비율은 각각 0.9%(12개)에 그치고 있음.

편의시설 보유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전체의 7.0%(98개)만 ‘외국인 안내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시장 점포주의 연령별 분포 현황은 평균 연령 60.7세, 39세 이하 비율 3.8%로 나타남.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점포 운영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상권(경쟁력) 약화’가 가장 높게(23.9%) 나타났으며, ‘온라인 몰의 상권 잠식’(18.3%), ‘운영자금 부족’(5.3%), ‘높은 임대료’(2.9%) 등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홍보 지원’(20.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시설 지원’(10.6%), ‘청년상인 창업지원’(6.7%), ‘온라인 판로 확대’(2.5%)

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5.12.

등에 대한 응답도 있었음.

개정안의 취지는 문화관광형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로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문화관광형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이나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부 항목을 예시로 열거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행정의 자율성 또는 정책현실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는바,⁴⁾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17조제1항제7호⁵⁾ 신설 당시 개정이유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적으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로 규정되어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의 빈 점포 활용에 제약 요건이 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⁶⁾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현행 임대료 지원 외에 관리비와 공과금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상인의 고정비 부담을 감소시켜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 및 체질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에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사업규모: 5,790억원)⁷⁾을 추진 중임.

다만,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 기존 상인과의 형평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55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이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7) 회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세부사업명(사업코드):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도모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년상인에 대한 관리비·공과금 지원은 적절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비용 지원보다는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목적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중 상인조직 및 특성화 역량을 보유한 곳

☐ 지원조건 및 한도 : 국비(40~60%), 지방비(40~60%) 매칭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pm 10\%$ 차등 지원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지방비 포함)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26년 85곳(신규 52, 계속 33)

☐ 사업내용

-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특색(문학, 관광, 역사)과 연계한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
- (특화요소 개발)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지원
- (판로지원) 시장 고유 콘텐츠를 연계한 오프라인 이벤트,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 지원 등